

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

소관부서 : 관광과

제정 1999·4·8 조례 제 279호
 개정 2001·3·7 조례 제 364호
 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)
 개정 2006·11·16 조례 제 640호
 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)
 일부개정 2013·5·6 조례 제 981호
 일부개정 2014·12·31 조례 제1102호
 (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 일부개정 2019·5·8 조례 제1487호
 일부개정 2021·6·25 조례 제1716호
 (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
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도자기의 성가 제고와 이천도자기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·5·6, 2019·5·8>

제2조(구성) ①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·5·6, 2019·5·8>

② 위원장은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시장(수석부위원장)과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된다. <개정 2013·5·6, 2019·5·8>

③ 위원은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회 의원, 관계 기관·단체의 장과 도자기 및 행사기획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·5·6, 2019·5·8>

④ 위원회에는 이천도자기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3·5·6>

[중전 제3조에서 이동 2019·5·8]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결정한다. <개정 2013·5·6, 2019

· 5· 8>

1. 이천도자기축제의 행사지원 방안
2. 이천도자기의 성과 제고 방안
3. 그 밖에 도자기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

[중전 제2조에서 이동 2019· 5· 8]

제4조(임기)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· 5· 6>

② 시장은 위원회 임기만료 전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이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3· 5· 6, 2019· 5· 8>

제5조(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3· 5· 6>
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이나,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
4.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

[제목개정 2013· 5· 6]

제6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3· 5· 6>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 삭제 <2013· 5· 6>

제9조(축제의 예산지원 등)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

에서 축제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축제예산을 축제 이외의 목적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, 보조금이 포함된 축제예산을 운용할 경우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14·12·31, 2021·6·25>

[본조신설 2013·5·6]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·5·6>

[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3·5·6]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3·5·6>

[제목개정 2013·5·6]

[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3·5·6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·3·7 조례 제364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6·11·16 조례 제640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3·5·6 조례 제98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·12·31 조례 제1102호,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「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 「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”를 “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”로 한다.

⑧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 <2019·5·8 조례 제148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·6·25 조례 제1716호,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
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